|  |  |  |
| --- | --- | --- |
| **정부정보 공개 행정사건 심리문제와 관련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法釋 [2011] 17호  《정부정보 공개 행정사건 심리문제와 관련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이 2010년 12월 13일에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505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이에 공포하며, 2011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011년 7월 29일  정부정보 공개와 관련한 행정사건을 정확하게 심리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정보 공개조례》 등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고 행정재판의 실무에 결부시켜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1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아래의 정부정보 공개업무 중의 구체적 행정행위가 그의 합법적 권익을 해쳤다고 인정하고 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마땅히 이를 수리해야 한다.  (1) 행정기관에 정부정보를 제공받고자 신청하였으나 행정기관에서 제공을 거절하거나 기간이 지나도 답변을 주지 아니한 경우  (2) 행정기관이 제공한 정부정보가 그가 신청한 내용 또는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적절한 형식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3) 행정기관이 스스로 공개를 해야 하거나 또는 타인의 신청에 따라 공개한 정부정보가 상업비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행정기관이 제공한, 그 자체와 관련되는 정부정보 기록이 정확하지 아니하여 당해 행정기관에 정정하도록 요구하였으나, 당해 행정기관에서 정정을 거절하거나 기간이 지나도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유관기관에 넘겨 처리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5) 행정기관이 정부정보 공개업무 중의 기타 구체적 행정행위가 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정부의 정보공개 행정행위가 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행정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아래의 행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수리를 하지 아니한다.  (1) 신청 내용이 불명확하여 행정기관이 신청인에게 수정, 보완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아울러 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실질적인 영향이 없는 고지행위  (2) 행정기관에 정부공보, 신문, 간행물, 서적 등 공개출판물을 제공받고자 요구하여 행정기관에서 거절한 경우  (3) 행정기관에 정부정보를 제작, 수집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또는 일부 정부정보를 일괄, 분석, 가공해 달라고 요구한 경우  (4) 행정절차 중에서의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정부의 정보공개 명의로 안건서류를 사열하고자 신청하여 행정기관에서 그에게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고지한 경우.  **제3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스스로 정부정보 공개의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에게 먼저 행정기관에 관련 정부정보의 취득을 신청하도록 고지해야 한다. 행정기관의 답변 또는 기간이 지나도 답변을 하지 않는데 대해 불복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4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국무원 부처, 지방 각급 인민정부 및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부처가 신청에 따라 정부정보를 공개한 행정행위에 대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답변을 한 기관을 피고로 하며, 기간이 지나도 답변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을 수리한 기관을 피고로 한다.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정부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행정행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당해 정부정보를 공개한 기관을 피고로 한다.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률, 법규에서 위임한, 공공사무 관리기능을 구비한 조직의 정부정보 공개행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직을 피고로 한다.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외에 법률적 효력을 발생하는 문서에 서명한 기관을 피고로 한다.  (1) 정부정보 공개여부에 대한 답변을 법적으로 유권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2) 정부정보 공개여부가 국가기밀 행정관리부처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기밀행정관리부처에 의해 확정된 경우  (3) 행정기관이 정부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유관 행정기관과 소통을 거쳐 확인을 한 경우.  **제5조** 피고가 원고에게 정부정보 제공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거절한 근거와 법정고지 및 이유 설명의무 상황에 대해 입증을 해야 한다.  공공이익의 필요로 인해 상업비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되는 정부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피고는 공공이익의 인정, 그리고 공개를 하지 아니하면 공공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입증을 하고 설명해야 한다.  피고가 원고와 관련되는 정부정보 기록에 대해 정정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거절하는 이유에 대해 입증을 하고 설명해야 한다.  피고가 정부정보가 국가기밀과 관련되는 것을 증명하고 소송 중에서 제출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마땅히 이를 허락해야 한다.  피고가 정부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원고가 당해 정부정보가 피고가 제작했거나 보존한 관련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에 증거 검증을 신청할 수 있다.  피고가 정부정보가 신청인의 자체 생산, 생활, 과학연구 등의 특수 수요와 무관하기 때문에 그 제공을 거절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원고에게 특수 수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원고가 피고가 정부정보 기록의 정정을 거절한다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제출한 정정 신청과 정부정보가 그 자체의 관련되며 아울러 기록이 정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제6조** 인민법원은 정부정보 공개 행정사건을 심리할 때 사정에 비추어 적정한 심리방식을 취함으로써 국가기밀, 상업비밀, 개인의 프라이버시 또는 법률에서 규정한 기타 비율을 유지해야 하는 정부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7조** 정부정보를 피고의 서류 보존기구 또는 서류 보존인원이 보관하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정보 공개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정부정보를 이미 각급 국가당안관에 넘겨준 경우에는 관련 보존서류 관리와 관련한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의 유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8조** 정부정보가 국가기밀, 상업비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마땅히 공개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정해야 한다.  정부정보가 상업비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되나 권리자가 공개하는 것을 동의하거나 또는 공개를 하지 아니하면 공공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전 항에서 규정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9조** 피고가 법에 따라 공개를 해야 하는 정부정보의 공개를 거절하거나 또는 일부의 공개를 거절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피고의 불공개 결정을 취소하거나 일부를 취소해야 하며, 아울러 피고가 일정한 기한 내에 공개하도록 판결해야 한다. 당분간 피고의 조사, 재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 내에 다시 답변하도록 판결해야 한다.  피고가 제공하는 정부정보가 신청인이 요구한 내용 또는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적절한 형식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피고가 신청인이 요구하는 내용 또는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적절한 형식에 따라 제공하도록 판결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심리를 거쳐 피고가 공개하지 아니한 정부정보 내용을 분할 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기한부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도록 판결해야 한다.  피고가 법에 따라 원고와 관련되는 정부정보 기록을 정정해야 하나 정정하지 아니한 경우, 인민법원은 피고가 일정한 기한 내에 정정하도록 판결해야 한다. 당분간에 피고의 조사, 재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 내에 다시 답변을 하도록 판결한다. 피고가 정정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정정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송부하여 처리하도록 판결한다.  **제10조** 피고가 원고의 정부정보 공개 또는 정정 신청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도 답변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인민법원은 피고가 일정한 기한 내에 답변을 하도록 판결해야 한다. 원고도 피고에게 정부정보를 공개하거나 정정할 것을 요구하고 또한 그 이유가 성립되는 경우는 제9조의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제11조** 피고가 공개한 정부정보가 원고의 상업비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되나 공공이익 등 법정 사유와는 관련이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정부정보를 공개한는 행위가 불법에 속함으로 판결하고 아울러 피고가 상응하는 보완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손해를 빚어낸 경우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판결한다. 정부정보를 아직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판결한다.  소송기간에 원고가 상업비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되는 정부정보 공개를 정지하도록 신청하여 인민법원에서 심사를 거쳐 당해 정부정보를 공개하면 만회할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공개를 정지하여도 공공이익에 손해를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잠시 공개를 정지하도록 재정할 수 있다.  **제12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고 피고가 이미 법정 고지 또는 이유 설명 의무를 이행한 경우 인민법원은 판결을 내려 원고의 소송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1) 정부정보에 속하지 않거나 정부정보가 존재하지 않거나 법적 공개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또는 법에 따라 피고가 공개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경우  (2) 공개를 신청한 정부정보가 이미 공중에 공개되어 피고가 이미 신청인에게 당해 정부정보의 취득 방식과 루트를 알려 준 경우  (3) 피고가 기한이 지나도 답변을 하지 않는다고 기소를 했으나 그 이유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4) 정부정보가 그 상업비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공개를 반대하나 그 이유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5) 피고에게 그와 관련되는 정부정보 기록을 정정하도록 요구했으나 그 이유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6) 정부정보 취득 신청이 자체의 생산, 생활, 과학연구 등 특수 수요에 필요한 것임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피고 또한 이에 근거하여 제공을 거절한 경우  (7) 신청인이 요구하는 형식에 따라 정부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며, 또한 피고가 이미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를 사열하도록 편리를 제공했거나 사본을 제공하거나 또는 기타 적절한 형식으로 제공한 경우  (8) 소송청구를 기각해야 하는 기타의 상황.  **제13조** 최고인민법원이 이 전에 내린 사법해석과 규범성 문건이 이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  |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政府信息公开行政案件若干**  **问题的规定**  法释〔2011〕17号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政府信息公开行政案件若干问题的规定》已于2010年12月13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505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11年8月13日起施行。  二○一一年七月二十九日  为正确审理政府信息公开行政案件，根据《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中华人民共和国政府信息公开条例》等法律、行政法规的规定，结合行政审判实际，制定本规定。  **第一条**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认为下列政府信息公开工作中的具体行政行为侵犯其合法权益，依法提起行政诉讼的，人民法院应当受理：  （一）向行政机关申请获取政府信息，行政机关拒绝提供或者逾期不予答复的；  （二）认为行政机关提供的政府信息不符合其在申请中要求的内容或者法律、法规规定的适当形式的；  （三）认为行政机关主动公开或者依他人申请公开政府信息侵犯其商业秘密、个人隐私的；  （四）认为行政机关提供的与其自身相关的政府信息记录不准确，要求该行政机关予以更正，该行政机关拒绝更正、逾期不予答复或者不予转送有权机关处理的；  （五）认为行政机关在政府信息公开工作中的其他具体行政行为侵犯其合法权益的。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认为政府信息公开行政行为侵犯其合法权益造成损害的，可以一并或单独提起行政赔偿诉讼。  **第二条**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对下列行为不服提起行政诉讼的，人民法院不予受理：  （一）因申请内容不明确，行政机关要求申请人作出更改、补充且对申请人权利义务不产生实际影响的告知行为；  （二）要求行政机关提供政府公报、报纸、杂志、书籍等公开出版物，行政机关予以拒绝的；  （三）要求行政机关为其制作、搜集政府信息，或者对若干政府信息进行汇总、分析、加工，行政机关予以拒绝的；  （四）行政程序中的当事人、利害关系人以政府信息公开名义申请查阅案卷材料，行政机关告知其应当按照相关法律、法规的规定办理的。  **第三条**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认为行政机关不依法履行主动公开政府信息义务，直接向人民法院提起诉讼的，应当告知其先向行政机关申请获取相关政府信息。对行政机关的答复或者逾期不予答复不服的，可以向人民法院提起诉讼。  **第四条**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对国务院部门、地方各级人民政府及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部门依申请公开政府信息行政行为不服提起诉讼的，以作出答复的机关为被告；逾期未作出答复的，以受理申请的机关为被告。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对主动公开政府信息行政行为不服提起诉讼的，以公开该政府信息的机关为被告。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对法律、法规授权的具有管理公共事务职能的组织公开政府信息的行为不服提起诉讼的，以该组织为被告。  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以在对外发生法律效力的文书上署名的机关为被告：  （一）政府信息公开与否的答复依法报经有权机关批准的；  （二）政府信息是否可以公开系由国家保密行政管理部门或者省、自治区、直辖市保密行政管理部门确定的；  （三）行政机关在公开政府信息前与有关行政机关进行沟通、确认的。  **第五条** 被告拒绝向原告提供政府信息的，应当对拒绝的根据以及履行法定告知和说明理由义务的情况举证。  因公共利益决定公开涉及商业秘密、个人隐私政府信息的，被告应当对认定公共利益以及不公开可能对公共利益造成重大影响的理由进行举证和说明。  被告拒绝更正与原告相关的政府信息记录的，应当对拒绝的理由进行举证和说明。  被告能够证明政府信息涉及国家秘密，请求在诉讼中不予提交的，人民法院应当准许。  被告主张政府信息不存在，原告能够提供该政府信息系由被告制作或者保存的相关线索的，可以申请人民法院调取证据。  被告以政府信息与申请人自身生产、生活、科研等特殊需要无关为由不予提供的，人民法院可以要求原告对特殊需要事由作出说明。  原告起诉被告拒绝更正政府信息记录的，应当提供其向被告提出过更正申请以及政府信息与其自身相关且记录不准确的事实根据。  **第六条** 人民法院审理政府信息公开行政案件，应当视情采取适当的审理方式，以避免泄露涉及国家秘密、商业秘密、个人隐私或者法律规定的其他应当保密的政府信息。  **第七条** 政府信息由被告的档案机构或者档案工作人员保管的，适用《中华人民共和国政府信息公开条例》的规定。  政府信息已经移交各级国家档案馆的，依照有关档案管理的法律、行政法规和国家有关规定执行。  **第八条** 政府信息涉及国家秘密、商业秘密、个人隐私的，人民法院应当认定属于不予公开范围。  政府信息涉及商业秘密、个人隐私，但权利人同意公开，或者不公开可能对公共利益造成重大影响的，不受前款规定的限制。  **第九条** 被告对依法应当公开的政府信息拒绝或者部分拒绝公开的，人民法院应当撤销或者部分撤销被诉不予公开决定，并判决被告在一定期限内公开。尚需被告调查、裁量的，判决其在一定期限内重新答复。  被告提供的政府信息不符合申请人要求的内容或者法律、法规规定的适当形式的，人民法院应当判决被告按照申请人要求的内容或者法律、法规规定的适当形式提供。  人民法院经审理认为被告不予公开的政府信息内容可以作区分处理的，应当判决被告限期公开可以公开的内容。  被告依法应当更正而不更正与原告相关的政府信息记录的，人民法院应当判决被告在一定期限内更正。尚需被告调查、裁量的，判决其在一定期限内重新答复。被告无权更正的，判决其转送有权更正的行政机关处理。  **第十条** 被告对原告要求公开或者更正政府信息的申请无正当理由逾期不予答复的，人民法院应当判决被告在一定期限内答复。原告一并请求判决被告公开或者更正政府信息且理由成立的，参照第九条的规定处理。  **第十一条** 被告公开政府信息涉及原告商业秘密、个人隐私且不存在公共利益等法定事由的，人民法院应当判决确认公开政府信息的行为违法，并可以责令被告采取相应的补救措施；造成损害的，根据原告请求依法判决被告承担赔偿责任。政府信息尚未公开的，应当判决行政机关不得公开。  诉讼期间，原告申请停止公开涉及其商业秘密、个人隐私的政府信息，人民法院经审查认为公开该政府信息会造成难以弥补的损失，并且停止公开不损害公共利益的，可以依照《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第四十四条的规定，裁定暂时停止公开。  **第十二条** 有下列情形之一，被告已经履行法定告知或者说明理由义务的，人民法院应当判决驳回原告的诉讼请求：  （一）不属于政府信息、政府信息不存在、依法属于不予公开范围或者依法不属于被告公开的；  （二）申请公开的政府信息已经向公众公开，被告已经告知申请人获取该政府信息的方式和途径的；  （三）起诉被告逾期不予答复，理由不成立的；  （四）以政府信息侵犯其商业秘密、个人隐私为由反对公开，理由不成立的；  （五）要求被告更正与其自身相关的政府信息记录，理由不成立的；  （六）不能合理说明申请获取政府信息系根据自身生产、生活、科研等特殊需要，且被告据此不予提供的；  （七）无法按照申请人要求的形式提供政府信息，且被告已通过安排申请人查阅相关资料、提供复制件或者其他适当形式提供的；  （八）其他应当判决驳回诉讼请求的情形。  **第十三条** 最高人民法院以前所作的司法解释及规范性文件，凡与本规定不一致的，按本规定执行。 |